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농업관련 법률 핵심 내용 정리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 법률 주요내용

- ①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
- ②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마련
-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 기능의 증진시책 방향과 적절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시책과 지역간의 소득 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⑤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함

⑥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을 개정,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식품산업진흥법

농업과 불과분의 관계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 법률안 주요 내용

①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농림부(장관)가 주관하게 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포함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② 식품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통계 조사, 해외교류 협력과 시장 개척 확대, 식품산업 질적 활성화 및 사업자 단체 등의 다양한 시책을 규정

③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식품 분야별로 우수한 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 육성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생산자와 식품업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추진 규정

④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장려하고, 고유의 음식 등 식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땅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이용한 식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함. 또한 우리 고유의 식문화와 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추진 근거 마련

⑤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등 식품 관련 인증제도의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유기식품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음

3.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의 지속가능한 교류체계 마련

○ 법률 주요내용

-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
- ② 도농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 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 또한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지원 근거 마련
- ③ 민간 차원의 도농 교류지원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 관광 등 민단 도농 교류지원을 위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 설치 근거 마련
- ④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한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 도입

4.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국적 실시로 인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의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 제고와 둔갑판매 방지,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법률 주요내용

- ①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 ②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

- ③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
- 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함
- ⑥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5.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선거 출마 가능 농협법 일부 개정

국회의원 및 여타 선거법에서는 형 집행이 만료와 동시에 선거에 출마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농축협조합장 선거법에는 형 만료 후 1년 경과와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음

○ 법안 주요 내용

- ①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조합장 및 이감사) 선거 출마가 형 집행 만료 이후 1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였으나 형 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가능하게 개정

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

실효성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식품을 확대 시킴

○ 법률 주요내용

- 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300㎡(약 90평) 이상에서 100㎡(약 30평) 이상으로 확대
- ②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식품은 쌀,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